

## 배급자 및 비직원 판매 대리인

---

- A. [요약](#)
- B. [적용 대상](#)
- C. [정의](#)
- D. [규정](#)
- E. [책임](#)

[첨부 1 - 정의](#)

[첨부 2 - 절차 및 요건](#)

[첨부 3 - 실사, 관찰, 훈련](#)

[첨부 4 - 신청 비망록](#)

[첨부 5 - 승인 및 통지](#)

[첨부 6 - 판매 중개 계약서](#)

## A. 요약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 은 기업 평판을 유지하고 회사 정책을 비롯한 독점 관행과 부패 관행을 금지하는 법령을 포함한 적용 가능한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기 위하여, 모든 배급자와 비직원 판매 대리인을 세심하게 선정, 선별하고, 면밀히 관찰하며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B. 적용 대상

본 정책은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 및 그 사업 단위, 자회사, 본부, 기타 지배 하에 있는 사업 법인 및 사업체(이하 “**운영 단위**”라 한다), 전 세계의 법인장, 관리자, 직원(총칭하여 “**UTC**”라 한다)에게 적용된다. 로비스트의 선정, 선별, 선임, 관찰은 **CPM 48D: 로비스트**를 적용한다.

## C. 정의

“**회사(Corporate)**”란 UTC 본사를 의미하며 “**사업 단위(Business Unit)**” 또는 “**BU**”란 Otis Elevator Company, Pratt & Whitney, UTC Aerospace Systems(Pratt & Whitney 와 함께 “**Aero BU**”라 총칭한다), UTC Climate, Controls & Security, United Technologies Research Center 를 의미한다. “**CPM**”이란 규정 및 표준 업무 지침을 의미한다. 기타 굵은 활자체로 된 용어는 **첨부 1**에 정의되어 있다.

## D. 규정

모든 배급자 및 비직원 판매 대리인(총칭하여 “**판매 중개자(Sales Intermediaries)**”라 한다)은 **UTC** 이름으로 , 또는 **UTC** 를 대리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 **부정한 금품**을 승인, 제안, 약속, 조성, 방조할 수 없다. **UTC** 는 이를 준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판매 중개자를 선임하지 말아야 하며, 그러한 기존 판매 중개자와의 관계를 종료하여야 한다. 판매 중개자는 **첨부 2**에 따라 선정, 선별, 선임, 관찰, 관리하여야 한다.<sup>1</sup>

## E. 책임

1. **BU 최고 경영자**. **BU** 의 최고 경영자는 **BU** 에서 본 규정(**첨부 2** 포함)의 이행과 준수에 책임을 진다 .
2. **BU 대표**. **BU** 의 최고 경영자는 **CVP GEC** 의 조언과 동의를 받아 본 규정의 이행에 있어 자신을 대리할 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이하 “**BU 대표(BU Representative)**”라 한다). **BU 대표**는 판매 및 마케팅 조직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본 정책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에게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BU 대표**는 **운영 단위** 수준에서 본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만큼 추가로 직원을 임명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본 정책에서 요구할 경우, 그러한 직원은 판매 및 마케팅 조직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본 정책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운영 단위**의 최고 경영자와 **BU 대표**에게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 **후원자**. **운영 단위** 수준의 최고 경영자는 각각의 **판매 중개자**에 대하여, 후보자격(신규 또는 갱신)을 후원하고 그 성과를 관찰하며, 각각의 경우에 본 규정의 내용과 정신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직원(“**후원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후원자**는 **판매 중개자**의 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운영 단위**의 과장(manager)급 직원이어야 하며, 현장 지식을 근거로 하여 판매 중개자의 평판과 본 규정에 대한 엄격한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sup>1</sup> 글로벌 윤리 및 규정 준수 담당 상무이사(이하 “**CVP GEC**”라 한다)은 본 규정과 **CPM 48: 부패방지**를 준수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할 경우 **첨부 1-6**을 규정하고 개정할 권리를 승인 받았다.

**첨부 1: 정의**

계열사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 언급된 **법인**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
- 언급된 **법인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
- 언급된 **단체와 법인**과 함께 또 다른 **법인**의 공동 지배 하에 있는 법인

장부 및 기록물(Books and Records)은 **CPM 48: 부패방지**에 정의되어 있다.

성과보수(Contingent Compensation)(또는 “커미션”이라고도 부름)는 **직접판매거래(Direct Sales Transaction)**에서 판매된 제품·서비스의 순 판매액의 일정 퍼센트 또는 고정된/일정한 금액을 판매 중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으로서, UTC가 **직접판매거래**를 완료한 경우에 지불 의무가 발생하며, UTC가 순 판매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한 경우에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다.

지배력(Control)이란 다음을 행하는 직간접적인 권한을 의미한다.

- 어느 단체의 운영 조직 구성원을 임명할 수 있는 의결권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주식 중 50%를 초과한 수의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의결권을 보유한 지분의 소유나 계약, 기타 방식을 통하여, 법인의 일상적인 경영 의사결정과 규정을 지시하거나 지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정 금품(Corrupt Payment)은 **CPM 48: 부패방지(Anti-corruption)**에 정의되어 있다.

고객(Customer)이란 UTC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 사용 또는 소비하는 제 3자를 의미한다.

직접판매거래(Direct Sale Transaction)란 UTC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를 위한 UTC와 고객간의 계약을 의미한다.

배급자(Distributor)란 본 규정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자유롭지 않은 기존 또는 향후 **공급자(Vendor)**로서, 다음의 여부와 무관하게 **간접판매거래(Indirect Sale Transaction)**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되거나 수입된 **공급자**를 의미한다.

- 이러한 **법인이 UTC** 또는 타인을 대신하여 **간접판매거래** 사업자 등의 자격을 스스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러한 **법인이 UTC** 또는 타인을 대리하여 다른 역할(예, **비직원 판매 대리인(NSR)**, 기타 **공급자**)을 수행 하였거나 수행 하고 있는 경우

정확하게 말하자면, 본 규정은 UTC에 대한 (계약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인한) 협조와 충성 의무를 지고 **간접판매거래**에 종사하는 **공급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배급자**에는 본 규정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자유로운 **공급자**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제 3자** 상업 소매업자(예, ‘대형 할인매장’ 또는 백화점, 소매 판매점)과 경쟁 입찰 또는 선정을 통해 고객에게 재판매 할 목적으로 제품(UTC 제품 및 비 UTC 제품)을 구매하는 일반 공급자도 제외된다. 단, 그러한 **제 3자** 소매업자와 일반 공급자는 본 규정과 **CPM 48: 부패방지**의 목적상 고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법인(Entity)이란 영리성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회사, 유한책임회사, 파트너십, 개인사업자, 신탁회사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 실체를 의미한다.

정부 항공 당국(GAA)은 **CPM 48B: 제 3자 여행 후원(Sponsoring Third Party Travel)**에 정의되어 있다.

정부(Government)란 다음 중 하나를 지칭한다.

- 국내 또는 외국 정부로서 국가, 지역, 지방 또는 도시 정부가 모두 포함된다.
- **정부 항공 당국(GAA)**
- 정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항공사
- 정부를 대신하여 공식적인 권한을 갖고 행동하는 **단체**
- 정부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단체**, 회사, 사업
- **정당**
- 공공 국제기구(예, 국제연합(UN),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무역기구(WT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 상기 조직의 부서, 기관, 산하 부문, 대행기관

정부 공무원(Government Official)이란 (선출직 또는 임명직을 불문하고) **정부**의 모든 수장(director), 관리자(officer), 또는 직원(employee) 또는 그러한 직위의 후보자를 의미한다.

간접판매거래(Indirect Sale Transaction)란 UTC와 **판매 중개자** 사이에 체결하는 UTC 제품 판매를 위한 계약으로서, **판매 중개자가 고객**에게 재판매 할 목적으로 (자비 사용의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에 대한 권한을 가질 의도가 있었거나 권한을 부여 받은 계약을 의미한다.

로비스트는 **CPM 48D: 로비스트 및 미국 정부 마케팅 및 판매 컨설턴트(Lobbyists and U.S. Government Marketing and Sales Consultants)**에 정의되어 있다.

판매 증개자에 관련하여, **실질적 변경(Material Change)**이란 다음 중 하나의 변경을 의미한다.

- 지배력
- **BU 대표** 또는 **BU** 법률 고문의 의견에 의거하여, 10%를 초과한 소유권 변경은 규정 위반 위험을 높이고 추가 실사를 요하게 한다.
- **BU 대표** 또는 법률 고문의 의견에 의거하여, 기타 사실이나 상황에 대한 변경은 규정 위반 위험을 실질적으로 상승시킨다.
- 필요한 **본사** 승인의 목적상, **본사**가 과거에 승인한 **판매 증개 계약**의 개정 변경은 규정 위반 위험 또는 과거에 승인된 보상금액을 상승시킨다.

비직원 판매 대리인(Non-Employees Sales Representative, 이하 “**NSR**”이라 한다)이란 그 단체가 다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본 규정으로부터 포괄적 면제를 부여받지 아니하였으며, 보수(금액, 형태, 또는 방식과 무관)를 대가로, **UTC**가 **직접판매거래**, **상계계약**, **상계거래**를 식별하거나 얻는데 도움을 주거나, **미국 정부 대상 마케팅** 또는 **미국 정부 대상 판매**를 위하여 선정하고 수입된 기존 또는 향후 **공급자(Vendor)**를 의미한다.

- **UTC** 또는 타인을 대리하여, **NSR** 로써 또는 **직접판매거래** 또는 **상계거래**를 식별하고 확보하는 사업자로써의 자격을 유지하거나, **미국 정부 대상 마케팅** 또는 **미국 정부 대상 판매**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 **UTC** 또는 타인을 대리하여 다른 권한(예, **배급자**, **공급자**)으로 행동하였거나 행동하고 있는 경우.

**상계거래(Offset Transaction)**는 **CPM 44: 산업 협력 및 경제적 상계**에 정의되어 있다.

**탈락 공급자 서류(Rejected Vendor File)**란 **운영 단위**가 관리하던 도중 **운영 단위**의 내부 사유로 거절되었거나 종료된 모든 **공급자**에 관한 서류로서, 적용 가능한 법령이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공급자**에 관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공급자** 번호, 공식 명칭, 회사 주주 각각의 공식 명칭 및 등록번호, 자연인 주주의 성명 및 식별번호, 최고 경영자의 성명 및 식별번호, 수속 서비스를 위한 법적 대표 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식별번호

**관련자(Related Party)**란 다음을 뜻한다.

- 개인의 경우, 개인의 직계 가족 또는 확대 가족 구성원으로서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삼촌, 삼촌의 배우자, 조카, 조카딸 등이 포함되나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 법인인 경우, **법인의 계열사**

**후원 여행(Sponsored Travel)**은 **CPM 48B: 제 3 자 여행 후원**에 정의되어 있다.

**영역 수수료 (Territory Fee)**란 **판매증개계약** 또는 적용 가능한 법령의 배타성 조항(exclusivity provision)을 위반하여, 특정 영역에서 **UTC**가 **직접판매거래** 또는 **간접판매거래**를 수행할 경우, **판매 증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제 3 자**는 다음을 뜻한다..

- 개인의 경우, **UTC** 또는 어떤 **UTC 계열사**의 직원도 아닌 모든 개인
- 법인인 경우, **UTC** 또는 **UTC**의 **계열사**가 아닌 모든 **법인**(본 규정의 목적 상, **UTC** 합작투자 파트너와 **공급자**, 그들의 해당 **계열사**들을 **제 3 자**로 정한다.)

**불공정 비교우위(Unfair Competitive Advantage)**란 미국 연방 또는 미국 주(州)·지방 **정부** 계약을 수주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수급자가 다음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위 **정부**의 공무원 또는 대표로부터 정당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획득한, 지적재산권이 있는 정보
- 계약에 관련된 공급자 선정 정보지만 모든 경쟁자에게 제공되지는 않으며, 특정 수급자가 계약을 따내는 데 도움을 줄 정보

**미국 정부 대상 마케팅(U.S. Government Marketing)**이란 미국 연방 또는 미국 주(州)·지방 **정부** 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에 관련하여 **UTC**가 수행하는 제안 준비에 관련하여 공급자가 **UTC**에 제공하는 조력을 의미하며, 주로 조건 및 정보의 형태이며, **공급자의 고객** 및 **정부 공무원**과의 접촉은 제한되어 있으며, **UTC** 직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진행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사업 기회 개발 또는 확인
- **UTC** 마케팅 계획 또는 전략 개발 또는 검토

- 조달 요건 확인
- 입찰서 또는 제안서 작성(“대항팀(red-team)”에 대한 검토도 시행.)

**미국 정부 대상 마케팅에는 미국 정부 대상 판매가 제외된다.**

**미국 정부 대상 판매(U.S. Government Sales)**란 미국 연방 또는 미국 주(州)·지방 **정부** 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및 그 계약의 집행과 이행을 위한 UTC 제안서의 작성, 제출, 협상에 관련하여 **공급자가 UTC**에 제공하는 조력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미국 정부 대상 마케팅**이 포함될 수 있으나, 주로 판매 활동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공급자와 고객 및 정부 공무원의 접촉**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UTC** 직원이 입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UTC**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홍보, 마케팅, 또는 판매
- **UTC**를 대리하여 **고객** 또는 **정부 공무원**과 접촉
- **UTC**를 대리하여 다음 중 하나의 공무원 또는 직원과 접촉 또는 대면
  - 미국 연방 기관, 미국 의회 의원, 미국 의회의 공무원 또는 직원, 연방 계약, 보조금, 부채 또는 협력 계약의 부여, 연장, 지속, 갱신, 수정, 또는 개정에 관련된 미국 의회 의원의 직원(이러한 유형의 활동은 「로비공개법」, 「미합중국법」 제 2 편제 1601 조 이하, 및 “버드 수정법(Byrd Amendment)”, 「미합중국법」 제 31 편제 1352 조, 「미연방 조달규정」(FAR) 제 3.8 절에 따라 규제된다.)
  - 유사한 목적을 갖는 미국 주(州), 지방·도시 정부의 대리기구, 입법부, 또는 지배기구

**공급자(Vendor)**란 UTC에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또는 향후의 **제 3자** 공급자 또는 제공자를 의미한다.

## 첨부 2: 절차 및 요건

### A. 선정

1. **운영 단위의** 최고 경영자는 BU 고위 관리층과 협의하여 **UTC** 직원 대신에 또는 **UTC** 직원에 추가하여, **판매 중개자**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시기와 이유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 **운영 단위의** 최고 경영자는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운영 단위** 수준에서 본 규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부 자원 평가가 포함된) 비용편의 분석을 수행하고, 반독점 또는 부패 관행에 관한 중대한 리스크가 있거나 본 규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예를 들면 효과적인 실사, 관찰 등을 수행할 수 없는 등의) 장애가 있는 마켓 세그먼트에서 건전한 비관론을 적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확정 결정문에는 **판매 중개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 기준(예를 들면 증서, 자격조건, 성과 기준, 업무 기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후보자가** 확인된 경우<sup>2</sup>, **후원자**는 해당 **후보자가** 이러한 기준을 어떻게, 그리고 왜 충족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사업상 사유서가 **신청 패키지**에 포함되도록 준비한다.
2. 요청하는 **운영 단위**는 **개인 서비스 공급자**이며 현직 **정부 공무원** 또는 현직 정부 공무원의 **관련자인 후보자**와 사전 논의에 착수하기 전에, **CPM 48C: 현직 및 전직 정부 공무원과 그 관련자의 고용 및 선임**에 있는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sup>3</sup>

### B. 위험도 순위 선정 및 선별(실사)

1. 각 **BU**는 각각의 **후보자·판매 중개자**가 야기할 수 있는 상대적인 규정 준수 위험도에 순위를 매겨 나열하여야 하며(이하 “**위험도 순위 선정**”이라 한다),<sup>4</sup> 유사한 상황에 있는 판매 중개자 그룹을 범주 “1”, “2”, “3”, “4”, 또는 “5”로 위험도가 낮아지는 순서로 분류한다(**첨부 3** 참조).
2. **BU 대표** 또는 **운영 단위**의 법률 고문(또는 판매 및 마케팅 조직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정 담당관)은 모든 **후보자**를 선별하여 후보자들의 증서, 자격, 윤리를 검증하며, 결과를 **첨부 3**의 항목 1~16으로 구성된 실사 서류(이하 “**실사 서류**”라 한다)에 정리한다. 실사의 성격과 범위는 유사한 상황의 **판매 중개자**에 대한 **BU**의 위험도 순위 선정, 반독점 또는 부패 관행이 야기하는 고유한 리스크, 특정 마켓 세그먼트에서 관련 실사 정보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첨부 3**에는 모든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사 요건이 제시되어 있다.
3. **운영 단위**의 법률 고문은 또한 미국 연방 정부가 관련된 **미국 정부 대상 마케팅** 또는 **미국 정부 대상 판매** 활동이 (a) 「**연방조달규정**」(이하 “**FAR**”라 한다) 제 3.104 조에 의하여 이행되는 「연방조달정책실(Office of Federal Procurement Policy, 이하 “**OFPP**”라 한다)법」의 “조달 윤리” 조항, “버드 수정조항”(FAR 제 3.8 조에 의하여 이행)의 요건을 충족시키며, (b) 「**로비공개법**」에 따른 관련 등록 및 보고 요건을 충족하고, (c) **UTC**에 **불공정 경쟁력 우위**<sup>5</sup>(**FAR 제 9.5 조**) 특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미국 주(州)·지방 정부가 관련된 **미국 정부 대상 마케팅** 또는 **미국 정부 대상 판매**의 경우, **운영 단위**의 법률 고문은 유사한 규제나 요건이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 C. 승인

1. 모든 승인 요청서는 **실사 서류**, 사전 요구에 요구되는 승인, **첨부 4**(**BU** 선의 승인만을 필요로 하는 요청서의 경우, 그에 따라 적절히 수정)에 제시된 완전히 집행된 비망록(이하 “**신청 비망록**”이라 한다)으로 이루어진 **신청 패키지**(이하 “**신청 패키지**”라 한다)를

<sup>2</sup> **운영 단위**는 본 규정 (또는 **BU**의 이행 규정)에 따라 승인되었으며, 현재 다른 **UTC** 제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는 신용있는 중개자들 중 기존의 **판매 중개자들**을 고려 대상으로 한다. 독점 권한에 대하여 다수의 개인 또는 회사가 고려되고 있는 경우, **운영 단위**는 명시된 객관적 기준이 기재된 경험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하여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sup>3</sup> **CPM 48C**에 따른 “회전문” 확인 대신, **운영 단위**는 **개인 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후보자**로부터, 적용 가능한 회전문 법규 준수에 관한 대의권과 보증을 획득하여야 한다(**첨부 6** 참조).

<sup>4</sup> 위험도 순위 선정 수행함에 있어 특히 고려할 요소에는 다음이 있다. (1) 관련 시장 - 반독점 또는 부패 관행이 야기하는 일반적 리스크 및 주(州)의 개입 정도, (2) **고객** - 기업 또는 **정부**, (3) 기타 구성인 - 예, 컨설턴트, 설계자, 디자이너 기타 **정부 공무원·영향력 행사자**의 개입 정도, (4) **판매 중개자** - 경험 수준, **UTC**와의 협력 기간, 비배타성 대표성(예, 경쟁자 대표), 다수의 권한 유지 여부(예, **배급자**, **NSR**, **현장 수급자**, 기타 **공급자**), (5) 보수의 성격 및 수준(**직접판매거래**), 판매량(**간접판매거래**), (6) 거래·제품 및 서비스 - 상품화된 제품의 저가 대량 판매 또는 차별화·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된 제품의 고가 거래 별 판매, (7) **UTC** 직원의 개입 - **UTC** 직원과 **판매 중개자/고객**/기타 구성인 간의 상호교류 정도, (8) **운영 단위** - 운영(예, 기존·핵심 사업 또는 신규 합병/통합 상태) 및 과거 규정 준수 이력

<sup>5</sup> **불공정 경쟁력 우위** 리스크는 통상적으로, 타인을 위한 업무를 통해 지적재산권이 있는 정보나 공급자 선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현직 **미국 연방정부 직원** 또는 미국 주(州) 또는 지방·도시 **정부 공무원**의 선임 시에 야기된다.

첨부하여야 한다. BU의 최고 경영자는 BU 승인에 관한 본 규정의 요건에 부합되도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한 승인의 성격과 수준은 유사한 상황에 있는 **판매 중개자**에 대한 BU의 **위험도 순위 선정**, 관련 마켓 세그먼트에 있는 반독점 또는 부패 관행이 야기하는 고유한 리스크, 제안된 보상의 수준, 또는 거래할 사업 규모, **후보자**를 반영하여야 한다. **첨부 5**에는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승인 및 통지 요건이 제시되어 있다.

- 요구되는 승인 수준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모든 **신청 패키지**와 승인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a) 일반적으로 판매 중개자나 특정 **후보자**가 필요한 사업상의 사유가 존재하고, (b) **후보자**가 필수적인 증서, 자격, 유효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재된 성과 요건을 충족시켰거나 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c) **미국 정부 대상 마케팅** 또는 **미국 정부 대상 판매**(해당되는 경우)로 인하여 UTC에 **불공정 경쟁력 우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며, (d) **후보자**가 **판매 중개 계약서**, UTC 정책, 독점 및 부패 관행을 금지하는 법령을 포함한 적용 가능한 법령을 준수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

#### D. 선임

- BU 대표 또는 운영 단위의 법률 고문(또는 지정 담당관)은 승인을 위하여 제출된 각각의 후보자에 대하여 (a) **후원자**의 사업 사유서와 **신청 패키지**와 일치하는 업무 범위, 성과 기준, 보수, 지불 조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첨부 6**(이하 “**판매 중개 계약서**”라 한다)와 일치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서면 계약서를 후보자에게 제공하고 (b) 후보자에게 서면으로 (i) UTC를 대표하는 것은 모든 필요한 UTC 내부 승인을 받고 완전히 서명된 **판매 중개 계약서**를 수령하였을 때에 시작되며, (ii) 계약서에 따라 미리 어떠한 지불금도 적립 또는 지불되지 아니하며, (iii) 시행된 **판매 중개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지불도 이루어지나 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며, (iv) **후보자**는 서명된 **판매 중개 계약서**와 본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UTC는 계약의 종료를 포함하여 모든 적절한 법적 행동을 취할 것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 어떠한 **판매 중개자**도 (a) 본 규정에서 요구하는 모 실사가 완료되고 승인을 얻을 때 까지는, (b) **운영 단위 및 판매 중개자**가 정당하게 승인된 **판매 중개 계약서**에 완전히 서명할 때까지는 UTC를 대표하거나 보수를 수령할 수 없다.
- 만료될 예정인 **판매 중개 계약서**의 갱신(제 H 조 참조)이 승인된 **판매 중개자**는 본 정책의 제 D 조에 따라 선임 한다.

#### E. 보수

- 보수 및 가격책정 정책.** BU의 최고 경영자는 **판매 중개자**에 대하여, 모든 형태의 보수(**직접판매거래**, **미국 정부 대상 마케팅**, **미국 정부 대상 판매**)와 제품 가격책정(**간접판매거래**)에 적용되는 본 정책의 요건과 일관되게 정책 및/또는 절차(이하 “**보수 및 가격책정 정책**”이라 한다)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수 및 가격책정 정책**은 특정 **판매 중개자** 또는 거래에 적용되었을 때, 또는 유사한 상황에 있는 **판매 중개자** 또는 거래에 적용되었을 때, 예측 가능하며 실증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수 및 가격책정** 규정에서는 경영진에게 수립된 기준이나 결과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재량권을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또한 경영진은 해당 가능성을 행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 재량권을 해당 보수 또는 제품 가격 할인을 줄이기 위해 행사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보수 및 가격책정** 규정을 이행하고 이를 특정 상황에 적용할 때, 이를 결정하는 요인은 **판매 중개자**의 종류(즉, **배급자** 또는 **NSR**)가 아닌, 수행할 거래의 성격(즉, **직접판매거래**, **미국 정부 대상 마케팅**, **미국 정부 대상 판매**, 또는 **간접판매거래**)이어야 하며, **보수 및 가격책정 정책**은 다양한 상황에서 (즉, **직접판매거래**, **미국 정부 마케팅**, **미국 정부 판매**, 및/또는 **간접판매거래**) **판매 중개자**를 활용해야 하는 **운영 단위**에 상세한 지침을 제공 한다.
- 일반 지침.** 보수 및 제품 가격 할인은 부패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줄이면서, 제공된 가치와 사업상 추정 리스크에 대한 합리적이고 시장에 기반한 대가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되어야 한다. 만약 어떤 BU가 의뢰비용을 제공하거나, UTC를 대표하는 중에 **판매 중개자**가 지불한 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보상하기로 한 경우, **성과 보수(Contingent Compensation)**를 없애거나 실질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판매 중개자**가 그 비용 회수하는데 완전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반영하여야 한다. **비용**의 보상은 UTC를 대표하는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판매 중개자**가 실제로 정산 영업과정에서 적법하게 지불한 경비로 한정되며 (사외 의뢰의 경우 비정상적 경비도 포함), 그 액수와 성격면에서 유사한 상황의 UTC 직원에게 정산하는 금액과 유사해야 한다. 홍보 및 교육훈련 자료, 제품 샘플, 보증 청구, 및 그와 유사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영 단위**는 **간접판매거래**에 주로 참여하는 **판매 중개자**에 대한 **비용** 정산을 삼가야 한다. 긴 기간에 걸친, 또는 일련의 거래(합계 단위 또는 판매량)에서 **판매 중개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한 인센티브 보수는 기수립된 객관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기준을 근거로 하여야 하며, 사실상의(de-facto) 선급금과 동시고용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제한하여야 한다. **간접판매거래**인 경우, (미래의 제품 구매 시, 거래량에 따른 가격 할인 대신의) 현금 리베이트 형태의 인센티브 보수는 강력하게 금지한다.

3. **직접판매거래. 직접판매거래** 시, 거래를 기초로 한 보수는 오로지 **성과 보수**여야 하며, **보수 및 가격책정 정책**에는 특정 **판매 증개자** 또는 **직접판매거래** 또는 유사한 상황에 있는 **판매 증개자** 집단 또는 **직접판매거래**에 적용하였을 때, 예측 가능한 (고정·일정한 가액 또는 퍼센트로 표현된) 실증적 결과가 나오도록 객관적이며 구속력 있는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성과 보수**는 유사한 상황에 있는 **직접판매거래**의 시장 커미션(유사한 상황에 있는 **간접판매거래**의 **간접판매거래** 차액이 아님) 또는 그와 유사한 기준에 기초하여야 하며, **판매 증개자**가 의뢰비용 또는 **비용** 정산을 받는 경우, 없애거나 실질적으로 감액하여야 한다.
4. **미국 정부 대상 마케팅 및 판매. 미국 정부 대상 마케팅 및 미국 정부 대상 판매**에 대한 보수는 오로지 수행된 서비스에 대한 고정액 또는 고정된 일당 또는 지급이어야 하며, 이러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 합리적인 월간 의뢰비용일 수 있다. 선금금, **성과 보수**, 인센티브 및 성공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구조 및 그와 유사한 방식은 금지된다.
5. **간접판매거래. 간접판매거래** 시, 부여할 거래를 기준으로 한 이득은 오로지 **판매 증개자**가 **UTC**로부터 구입한 제품 구매 가격과 고객에게 제품을 재판매 한 가격의 차액(이하 “**간접판매거래차액**”이라 한다)(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보수 및 가격책정 정책**은 특정한 **판매 증개자** 또는 **간접판매거래**에 적용하거나 유사한 상황에 있는 **판매 증개자** 집단 또는 **간접판매거래**에 적용하였을 때 예측 가능하고 실증적인 결과(할인 퍼센트 및 가격으로 표현)가 나오도록, **UTC**가 **판매 증개자**에게 판매한 가격(할인 포함)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속력 있는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BU**는 **간접판매거래**에 관련하여 **성과 보수** 또는 기타 금전적 보상을 지불할 수 없다.

#### F. 지불

1. **판매 증개자**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세부내역이 정확하게 기재된 청구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a) **판매 증개자**에게 의뢰비용 또는 **성과 보수**가 제공된 경우에도 실제 수행한 서비스, (b) **직접판매거래** 또는 지원한 **직접판매거래**, (c) 서비스를 수행한 개인 또는 **단체**, (d) 수행 기간, (e) 영수증 원본이 존재하고, **판매 증개 계약서**에 따라 지불하여야 할 모든 **비용**.
2. 청구서가 앞에 기술된 조건을 충족시키며, 청구된 활동과 지불이 (a) **보수 및 가격책정 정책** 및 **판매 증개 계약서**(및 정당하게 승인되었고, 완전히 집행된 거래 또는 프로젝트 별 계약서, 구매 주문서, 부록)에 명시적으로 승인되어 있으며, (b) **성과 보수**인 경우, **운영 단위**가 해당 **직접판매거래**를 완료하였으며, 그러한 거래로 인하여 지불 받을 권리가 있는 순 판매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였음을 나타내는 충분한 서류로 증빙되었을 때에만 지불이 승인되어야 한다. **CVP GEC**가 부여한 포괄적 면제가 없는 경우, 지불된 **성과 보수**의 액수는 실제로 회수한 순 판매 대금에 정확하게 비례하여야 한다.<sup>6</sup>
3. 어떠한 경우에도 (a) **판매 증개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하였거나, (b) **성과 보수**에 대한 선금금에 해당되거나 (예, 실제 순 판매 대금을 수령하기 전, 또는 순 판매 대금의 비례액보다 큰 액수), 또는 (c) **부정 금품에 해당하거나** 그러할 모습을 띠는 경우에는 어떠한 지불도 이루어질 수 없다.
4. 모든 지불은 (a) 회사 감사관실-지정 담당관(**회사-UTIO**가 집행한 **판매 증개 계약서**인 경우), 또는 **운영 단위** 본사 재무부(위임 권한 없음)(**BU**가 집행한 **판매 증개 계약서**인 경우)가 승인 및/또는 집행하여야 하며 (b) (**CVP GEC**의 예외 승인이 없을 경우), 오로지 **판매 증개자**가 소재한 사법권역에 승인된 **판매 증개자**의 명의로 등록된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야 하며, (c) **운영 단위의 장부 및 기록물**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5. **미국 정부 대상 마케팅 및 미국 정부 대상 판매**인 경우, 조달 담당 **운영 단위**는 미국 연방 정부의 비용 허용가능성(allowability) 규칙에 따라 그러한 비용의 허용가능성과 할당가능성(allocability)을 결정하기 위해, 제출된 청구서와 **비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미국 정부 대상 마케팅 및 미국 정부 대상 판매**를 위하여 지불된 수수료와 비용은 **운영 단위**의 정부 회계 직원 또는 **UTC** 정부회계 부감사관의 사전 승인이 없을 경우, 미국 연방 **정부** 항목에 직간접적으로 계상하지 말아야 한다.

#### G. 관찰 및 훈련

<sup>6</sup> 예를 들면, 만약 **보수 및 가격책정 정책**에서, 완료된 **직접판매거래**당 2라는 고정 또는 일정한 금액을 승인하였고, **직접판매거래**가 실제로 총 순 판매 대금 100으로 완료되었으며, 경영 단위는 당시까지 그로부터 50을 회수하였을 경우, 지불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성과 보수**는 1(.5\*2)이다. 만약 앞의 예를 적용할 때, **보수 및 가격책정 정책**에서, 완료된 **직접판매거래**당 순 판매 대금의 2%라는 고정된 퍼센티지를 승인하였다면, 지불 의무가 있는 **성과 보수**는 1(.02\*50)이 된다.



1. **개요.** 운영 단위는 본 정책의 내용과 정신을 엄격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모든 **판매 중개자**를 충분히 관찰하고 훈련시켜야 한다. 관찰과 훈련의 성격과 범위는 판매 중개자의 **위험도 순위**를 반영하며, **후원자**는 필요한 관찰과 훈련의 완수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관찰 책임의 일부로서, **후원자**는 다음(가능한 한도까지) 중 하나 이상에 정기적이며 개인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직접적인 지식에 기초한 **후원자**의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판매 중개자**의 사업장 방문, 사업장의 행동강령 및/또는 규정 점검, 경영층 및 직원과의 교류 및 면담, 직원과 대동하여 **제 3자** 방문(NSR의 경우), 기존 및 향후의 프로젝트 또는 거래 현장을 방문하거나 **판매 중개자**와 관련이 있는 **제 3자**와 대화. **첨부 3**에는 **판매 중개자** 및 **후원자**에 대한 최소한의 관찰 및 훈련 요건이 제시되어 있다.
2. **프로젝트/거래 관찰.** 운영 단위는 적절한 활용과 투명한 채널 관리를 통해 프로젝트 또는 거래가 정확하고 완벽하게 운영 단위의 **장부 및 기록물**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별 프로젝트 또는 거래에 대한 **판매 중개자** 이용에 적용되는 본 규정의 요건과 관련된 규정 및/또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또는 거래의 초기 단계 이후에 판매 중개자를 도입하고 어느 판매 중개자에서 다른 판매 중개자로 교체하거나 **직접판매거래**를 **간접판매거래**(또는 이와 반대)로 프로젝트 또는 거래 구조를 변경하려면 급박하고 정당한 사업상의 사유와 더 높은 수준의 승인(운영 단위의 법률 고문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을 요한다. 급박하고 정당한 사업상의 사유가 제시되었고 거래 구조의 변경이 승인된 경우(예, 선의 및 고객-OEM 계약상의 비밀 요건에 따라 **간접판매거래**에서 **직접판매거래**로 변경), 새로운 거래 구조에서 보수 또는 가격책정 정책은 **보수 및 가격책정 정책**에 제시된 기존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판매 중개자**와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 **영역 수수료** 조항에 따른 지불을 증빙하는 상황은 운영 단위의 **장부 및 기록물**에 완벽히 기재하여야 하며, **영역 수수료** 조항 및 그와 유사한 조항은 사실상의 **성과 보수**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운영 단위가 **직접판매거래**를 위해, **간접판매거래**만을 위하여 승인된 **판매 중개자**를 이용할 것을 요청한 경우, 운영 단위는 우선 본 규정의 요건에 따라 모든 필요한 NSR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러한 프로젝트 또는 거래에 관한 보수는 기존의 **보수 및 가격책정 정책**에 엄격하게 부합되어야 한다.

## H. 갱신 승인

**판매 중개자** 승인은 최대 4년 주기로 갱신되어야 한다(범주 1로 지정된 판매 중개자(**첨부 3** 참조) 또는 **미국 정부 대상 마케팅**, 또는 **미국 정부 대상 판매**를 제공하는 경우는 2년). 운영 단위의 법률 고문은 해당 운영 단위가 사업상의 사유와 성과로 볼 때 갱신이 필요하며, 갱신 승인이 진행 중이고, 실사 결과, 실질적인 부정적인 결과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개월간 연장을 부여할 수 있다. 기존 **판매 중개자**에 대한 갱신 수속을 개시하기 전에 요청하는 운영 단위는 사업상의 사유와 성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제 1 조에 따라, 더 이상 사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예, 마켓 세그먼트 또는 고객을 UTC 직원이 효과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활동이 없거나 성과가 낮은 경우) 해당 **판매 중개자**와의 관계를 종료하여야 한다. 필요한 실사의 성격과 수준, 요청하는 운영 단위가 사업상의 사유가 남아 있다고 결정한 **판매 중개자**에 대한 갱신 승인은 **판매 중개자의 위험도 순위**, **판매 중개자**에 대한 변경의 실질성(있는 경우), 제안된 업무 범위, 또는 **판매 중개 계약서**를 반영하여야 한다. **첨부 3**과 **첨부 5**에는 기존 **판매 중개자**의 갱신을 위한 최소한의 실사 요건과 필요한 승인이 각각 제시되어 있다.

## I. 종료

신청 수속 또는 수행 기간 중에 언제라도, 만약 BU 대표·지정 담당관이 어떤 **후보자** 또는 **판매 중개자**가 실사 또는 관찰 과정에서 완전히 협조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할 의사가 없거나, **판매 중개 계약서**, UTC 정책, 또는 적용 가능한 법령을 완전히 준수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할 의사가 없다고 합리적으로 간주하는 경우, 서면으로 BU 법무감·지정 담당관 또는 CVP GEC·지정 담당관(승인된 **판매 중개자** 또는 **회사**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sup>7</sup> 만약 규정 준수와 관련된 이유로 인하여 **판매 중개자**와의 관계가 종료되었거나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 BU는 신속하게 이를 CVP GEC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up>7</sup> 비록 비협조, 비준수 관련 사안은 사안 별로 평가해야 하나, 후보자격 또는 **판매 중개자** 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사유는 특히 다음과 같다: 어떤 **후보자** 또는 **판매 중개자**가 (a) 본 규정, BU의 이행 규정 또는 **판매 중개 계약서**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나 증서를 기재 또는 제공하기를 거부하거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b) 거짓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c) 필요한 면접예의 참여, 기타 독립된 조사 회사와의 협조를 포함하여, 실사 활동에 대한 협조를 거절 또는 수행하지 않는 경우, (d) 정부가 발급한 워치리스트(watch list)에 있는 거부 또는 제한 당사자, (e) UTC 직원과의 사이에 생긴 이해의 충돌이 조정불가할 경우 또는 해당 **후보자** 또는 **판매 중개자**가 UTC를 대표하게 될 사안에서 경쟁자, 고객, 정부, 정부 공무원, 기타 의사결정자, 또는 영향력을 보유한 자와 부적절한, 금지된, 은폐된 관계가 있는 경우, (f) 고객, 정부, 또는 정부 공무원이 특정 거래 또는 일련의 거래를 위하여 요청한 경우, (g) UTC가 승인한 대표로서의 **판매 중개자** 신분을 UTC가 고객, 정부, 정부 공무원에게 공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 (h) 부패 또는 반독점 관행에 관한 혐의(수사 포함) 또는 기록이 있는 경우, (i) 개인 또는 회사의 형사 유죄판결, 파산 또는 지불불능, (j) 비정직성, 불공정 또는 비윤리적 거래에 관련된 평판, (k) 어떤 사법권역에서 기피 인물(persona non-grata)이 된 경우, (l) **판매 중개 계약서**의 시행을 거부하거나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m) 합리적인 관찰과

**J. 포괄적 면제**

**CVP GEC**는 유사한 상황에 있는 **공급자** 집단을 위해 **BU**의 신청이 있을 시 이 규정의 요건들에 대한 포괄적인 면제를 허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이 공급자들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극히 미미하고 상황이 달라진다면 적절한 통제하에 둘 것임을 설명해야 한다.

**CVP GEC**와 **BU 대표**는 승인된 포괄적 면제 목록을 관리 한다.

**K. 합병 후 통합**

실질적으로나 명목상으로 **판매 중개자**의 정의를 충족하는 하나 이상의 **제 3 자**와 관계 또는 협의를 맺고 있는 어떠한 회사를 합병한 경우, 합병하는 **BU**는 그러한 **제 3 자**의 명단과 협의를 획득하여야 한다. **CVP GEC**·지정 담당관의 연장 또는 포괄적 면제가 없는 경우, 실현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합병하는 **BU**는 그러한 모든 **제 3 자**가 합병을 완료한 지 6개월 이내에 윤리 및 규정 준수 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러한 부적절한 협이가 종료되거나 마감된 지 12개월 이내에 본 규정의 조건에 따라 선정, 선별, 승인, 유지, 관찰, 훈련, 보상, 지불 받도록 하여야 한다.

**L. 보고**

**BU**는 매년 **UTC 리스크 및 규정 준수 이사회(CPM 34: 글로벌 윤리 및 규정 준수 프로그램 참조)**에 다음을 보고할 것이다: (a) **판매 중개자**의 기본 자료(예, 숫자, 유형, 위치, 관련 운영 단위, 보수, 위험도 순위 개요), (b) **판매 중개자** 규제에 관한 기존 규정에 관한 개요(보상 및 가격책정 정책 포함) 및 실질적 개정안, (c) 관찰 및 훈련 프로그램 및 계획(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d) **판매 중개자** 활용 전략(내부 판매 직원으로의 교체 계획 포함), (e) 본 정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실질적 사안, (f) 선정 단계 중에 후보자로서 탈락된 **판매 중개자** 대상자, 관계가 종료된 기존 **판매 중개자**, 또는 성과 이외의 이유로 갱신되지 아니한 **판매 중개자**에 관한 개요, (g) **이사회**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사안

**M. 전환 시 검토**

본 규정을 본질적으로 개정할 지 6개월(또는 **CVP GEC**가 승인한 다른 기간) 이내에 각 **BU**는 명목상 또는 실제적으로 **판매 중개자**의 정의에 부합되는 (그리고 달리 포괄적 면제가 부여되지 아니한) 기존 **공급자**들 및 개정일 당시에 완벽히 준수하고 있지 아니할 수 있는 기존 **판매 중개자**들이 본 정책을 완벽히 준수하도록 할 종합적인 계획을 **CVP GEC**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에는 그러한 **판매 중개자**의 리스크 랭킹 및 범주 1, 2, 3 **판매 중개자**에 대한 신속처리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판매 중개자** 선정 대상자가 관련된 모든 기타 경우, **BU**는 본 정책의 모든 요건에 대한 준수를 확보할 책임이 있는데 여기에는 개정 전 승인이 불필요했던 사안에 대한 회사 승인도 포함된다.

---

감사 활동을 불허한 경우, 필요한 보고서의 제출 또는 필요한 훈련 참석을 반복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판매 중개자**에 관련된 비행(卑行) 가능성에 대한 혐의로 유발된 내부 또는 외부 조사에 완전히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n) **판매 중개 계약서**를 위반한 경우

**첨부 3: 실사, 관찰, 훈련**

다음 표에는 선정, 사용 중, 갱신 단계에서 요구되는 실사, 관찰, 훈련 요건이 제시되어 있다. 어떤 **운영 단위**가 해당 BU 또는 다른 BU 의 다른 **운영 단위**가 이미 선임하고 있는 **판매 중개자**의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모든 선정 실사 대신에 선정 실사 요건 2, 6-9, 16(필요하고/적용 가능한 경우)으로 충분할 것이다. 단, (1) 해당 **판매 중개자**의 새로운 역할에 관한 위험도 순위가 기존 역할과 동일하여야 하며, (2) 실사 요건 4, 13-15(필요한/적용 가능한 대로)에 관련된 보고서의 작성일자로부터 2년 미만일 것을 조건으로 한다. 만약 과거에 회사가 해당 **판매 중개자**를 승인한 경우, BU 대표는 기존 **판매 중개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신규 **판매 중개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수정안이 있는 경우, 이를 CVP GEC 에게 통지함으로써, CVP GEC 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추가적인 검토와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험도 순위 범주					
		1 <sup>8</sup>	2	3 <sup>9</sup>	4	5 <sup>10</sup>	
갱신	31	선정 실사 1-16	X				
	30	선정 실사 1-14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없음	X			
	29	선정 실사 1-13	해당 없음	X			
	28	선정 실사 1-13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X		
	27	선정 실사 1-12	해당 없음	해당 없음	X		
	26	선정 실사 1-1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X	
	25	선정 실사 1-7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X
사용 중	24	연간 현장 보장 검토 및 실제 훈련	X				
	23	월간 판매 중개자 활동 보고서	X				
	22	현장 보장 및 실제 훈련 계획	해당 없음	X			
	21	연간 워치리스트-데이터베이스-언론매체 선별	X	X			
	20	연간 인터넷 검색	[X]	[X]	X		
	19	연간 판매 중개자 온라인 훈련	X	X	X		
	18	연간 판매 중개자 확인	X	X	X		
	17	연간 후원자 확인	X	X	X	X	X
선정	16	국방 물품 중개 공개 성명	X				
	15	국제회사프로필(ICP)-대사관 참조	X				
	14	강화된 독립 조사 회사 보고서	X	X			
	13	표준 독립 조사 회사 보고서	[X]	X	X		
	12	후보자 면접	X	X	X		
	11	운영 단위 이해관계 충돌 확인	X	X	X		
	10	인터넷 검색	X	X	X	X	
	9	운영 단위 탈락 공급자 서류 확인	X	X	X	X	
	8	후원자 사업상 사유 설명	X	X	X	X	
	7	BU 대표 확인	X	X	X	X	X
	6	후원자 확인	X	X	X	X	X
	5	전직 UTC 직원 확인	X	X	X	X	X
	4	사업 참조 보고서	[X]	[X]	[X]	X	X
	3	MK Denial 검색	X	X	X	X	X
	2	후보자 확인	X	X	X	X	X
	1	후보자 설문지	X	X	X	X	X

**주석:**

- 후보자가 기재하고 서명한 설문지로서 후보자의 (a) 기본 회사-개인 정보, (b) 소유관계, (c) 계열사, (d) 핵심 인물, (e) UTC 가 과거에 채용한 대리인 또는 핵심 인물, (f) 승인-자산상태-지급능력, (g) UTC-정부-정부 공무원-고객과의 관계, (h) 기타 관계-소속(예, UTC 경쟁자, 무역협회), (i) 윤리-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및 행동, (j) 참고자료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 후보자 설문지, 설립-운영 문서의 정확성, UTC 공급자 행동강령, 적용 가능한 UTC 정책 및 법령에 대한 이해, 그에 대한 준수 능력-의지 등을 후보자가 기재하고 서명한 확인서, 후보자 설문지의 일부로 포함시킬 수 있다.

<sup>8</sup> 범주 1 은 항공기, 항공기 엔진, 시스템, 서브시스템 판매 시 성과 보수를 수령하도록 승인된 (a) 신규 Aero BU NSR, (b) 기존 Aero BU NSR 에게 배정된다. (오로지 항공기 예비 부품 판매에 대한 성과 보수는 제외).

<sup>9</sup> 미국 정부 대상 마케팅 또는 미국 정부 대상 판매를 제공하는 판매 중개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사, 관찰, 훈련, 갱신 요건

<sup>10</sup> 범주 5 는 CPI>65 이며, 야기되는 부패 리스크가 미미하며, 각주 4 에 제시된 인자를 적용했을 때, 다른 BU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정 준수 위험도가 가장 낮은 국가에서 활동하는 판매 중개자에게 일반적으로 배정된다.

3. **BU 대표**·지정 담당관의 MK Denial 검색. **후보자**, 알려진 관계사, 그들의 대리인/핵심 인물이 **정부 발행 위치리스트에 등재된 거부 또는 제한 당사자인지 확인한다.**
4. **BU 대표**·지정 담당관이 구매한 Dun Bradstreet, TRAC, 또는 TRACE-check-equivalent 보고서. **후보자 설문지 및 후보자 확인서의 정확성을 교차 확인한다.**
5. **BU 대표**·지정 담당관이 **후보자** 설문지 상 후보자 대리인 또는 핵심 인물인지 아니면 전직 **UTC** 직원인지 확인. UTC 재직 중에 비행 및/또는 회사 정책 위반 이력이 있는지 사례 관리 시스템 또는 채용 서류 확인한다.
6. **UTC** 공급자 행동강령 및 적용 가능한 **UTC** 규정(또한 범주 4와 범주 5의 경우, **BU**가 요구하는 윤리 및 규정 준수 교육 이행 포함) 검토, **실사 서류** 검토, **후보자**가 **UTC** 공급자 행동강령, **UTC** 정책·적용 가능한 법령을 준수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을 제시하는 사실 또는 상황을 미인지하였음에 관한 **후원자**가 기재하고 서명한 확인서
7. **실사 서류**, **후보자**가 **UTC** 공급자 행동강령, **UTC** 정책·적용 가능한 법령을 준수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을 제시하는 사실 또는 상황의 미인지에 관한 **BU 대표**·지정 담당관이 기재하고 서명한 확인서
8. **판매 증개자**·**후보자의** 활동과 보수 안에 관해 **후원자**가 작성/서명한 사유서, **운영 단위**, 내부 판매 자원, 관련 시장, 선정 절차·기준, 업무 범위·성과 기준, **후보자** 지지 사유, 적용 가능한 보수 및 가격책정 정책, 보수 구조(추정 합계액 및 거래당·최대 상승률 포함, **UTC** 제품 가격에 포함 되었는지 여부 및 방법에,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대외군사판매(FMS)·대외군사판매차관(FMF) 프로그램, 보수가 관련 미국 정부 법규에 따라 허용 가능한 직접 또는 간접 비용인지의 여부)에 대한 설명 포함한다.
9. **BU 대표**·지정 담당관의 **운영 단위 탈락 공급자** 서류 확인. 후보자·후보자의 대리인/핵심 인물/관계사에 대한 사전 거부/관계 종료는 없는지 확인한다.
10. **BU 대표**·지정 담당관에 의한 **후보자**, 알려진 관계사, 그들의 대리인·핵심 인물에 대한 구글 또는 그와 대등한 검색. 후보/대리인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없는지 확인한다.
11. **BU 대표**·지정 담당관이 **운영 단위** 급여 대상자 목록 및 직원 비상 연락망을 **후보자의** 대리인/핵심 인물에 대하여 확인한다. 운영 단위에 있는 어떠한 UTC 직원이 선임하는 후보자에 대하여 소유관계나 금전적 이익(직접 또는 간접)이 없는지 확인한다.
12. **BU 대표**·지정 담당관(모든 범주 1에 대하여 법률 고문(대면 또는 현장), 모든 범주 2에 대하여 법률 고문(전화, 대면, 또는 현장))가 **후보자의** 대리인을 면접(전화, 대면 또는 현장). 후보자의 증서, 자격을 확인하고 후보자 설문지, 후보자 승인, 작동 서류, 후보자 확인서의 정확성을 평가한다.
13. 다음을 포함하는 저명한 독립 조사회사가 수행한 조사 및 보고서(“**표준 독립 조사회사 보고서**”(CVP GEC·지정 담당관이 확인)(a) 증서 검증(기본 회사·개인 정보, 소유관계, 관계사, 핵심 인물, 승인·자산상태·지급능력), (b) 데이터베이스·언론매체 검색(정부가 발행한 위치리스트 포함), (c) 고객, 업계 동료, 규제 공무원, 기타 독립된 출처, **후보자의** 직원에게 문의하여 자격·평판 평가, **BU 대표**·지정 담당관은 항목 3, 4, 10 대신에, **표준 독립 조사회사 보고서**에 제시된 증거에 의존할 수 있다(단, **후보자** 또는 **판매 증개자**가 양호한 자산 상태에 있어야 한다).
14. 다음을 포함하는저명한 독립적 조사 회사의 조사 및 보고서(“**강화된 독립 조사회사 보고서**”) 작성한 그와 대등한 보고서(CVP GEC/지정 담당관이 승인.): (a) 증서 검증(기본 회사·개인 정보, 소유관계, 관계사, 핵심 인물, 승인·자산상태·지급능력), (b) 데이터베이스·언론매체 검색(정부가 발행한 위치리스트 포함), (c) 고객, 업계 동료, 규제 공무원, 기타 독립된 출처, **후보자의** 직원에게 문의하여 자격·평판 평가, (d) **후보자의** 등록 및 운영 주소의 현장 조사(및 사진) 및 **후보자의** 직원에 대한 현장 문의. **BU 대표**·지정 담당관은 항목 3, 4, 10 대신에 **강화된 독립 조사회사 보고서**에 제시된 증거에 의존할 수 있다(단, **후보자** 또는 **판매 증개자**가 양호한 자산 상태에 있어야 한다). **BU 대표**·지정 담당관은 또한 **강화된 독립 조사회사 보고서** 대신에 **표준 독립 조사회사 보고서**에도 의존할 수 있다. 단, **UTC** 법률 고문이 (항목 12에 관련하여) (d)에 제시된 현장 조사와 문의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5. ICP 보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International Company Profile, 가장 가까운 미국 대사관의 상무참사관으로부터 참조한다. 이러한 요건을 갈음할 경우 ICP 보고서 또는 대사관 참조가 포함된 **강화된 독립 조사회사 보고서**가 충분할 것이다.
16. 만약 **후보자의** 업무 범위 안(案)에 국방 물품 또는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UTC** 국제 거래 컴플라이언스 요건 매뉴얼(International Trade Compliance Requirements Manual)에 따라 작성된 「국제무기교역규정」(ITAR) 중개 설문지(Brokering Questionnaire). 만약 ITAR 제 129 장의 요건이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UTC** 국제 거래 컴플라이언스 요건 매뉴얼에 기재된 대로 **후보자의** ITAR 제 129 장 준수 증거
17. **후보자** 설문지 및 **판매 증개 계약서**의 표명 및 보증의 지속적 정확성(즉, 실질적 변경이 없음), **판매 증개자의** **UTC** 공급자 행동강령, **UTC** 정책, 적용 가능한 법령, **판매 증개 계약서** 준수에 관하여 **후원자**가 기재하고 작성한 확인서
18. **후보자** 설문지, **판매 증개 계약서**의 표명 및 보증의 지속적인 정확성(즉, 실질적 변경이 없음) 및 **UTC** 공급자 행동강령, **UTC** 정책, 적용 가능한 법령, **판매 증개 계약서** 준수에 관하여 **판매 증개자**가 기재하고 서명한 확인서
19. 위험도 순위에 따라 **BU**가 명시한 하고 판매 증개자가 필요한만큼 완료한 연간 온라인 훈련 커리큘럼
20. 항목 10과 동일함, 연간 실시 기준
21. 승인된 독립된 조사 회사를 이용하여 **판매 증개자**, 알려진 관계사, 그들의 대리인·핵심 인물에 대하여 **정부가** 발행한 위치리스트, 컴플라이언스 데이터베이스, 언론매체 검색. 판매 증개자 대리인에 관한 중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없음을 확인한다. **BU 대표**는 조사 회사가 수행한 언론매체 검색에 일반 인터넷 검색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간 구글 또는 그와 대등한 검색(항목 20) 대신에 21에 의존할 수 있다.
22. 규정 준수 관련 **BU** 직원의 **판매 증개자**에 대한 현장 보증을 검토한다(**BU** 계획에 따라).
23. **판매 증개자**가 보고 기간 중에 수행한 활동을 상세하게 기술한 **판매 증개자**가 기재하고 서명한 서면 활동 보고서. **판매 증개자**는 보고서에 있는 각 활동의 정확성 및 **후보자** 설문지, **판매 증개 계약서**의 표명 및 보증의 지속적인 정확성(즉, 실질적 변경이 없음) 및 **판매 증개자의** **UTC** 공급자 행동강령, **UTC** 정책, 적용 가능한 법령, **판매 증개 계약서** 준수를 확인할 것이다. **후원자**는 자신이 서면 활동 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판매 증개자**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지하고, **후보자** 설문지, **판매 증개 계약서**의 표명 및 보증의 지속적인 정확성(즉, 실질적 변경이 없음), **판매 증개자의** **UTC** 공급자 행동강령, **UTC** 정책, 적용 가능한 법령, **판매 증개 계약서** 조항 준수, 활동 보고서가 부정확하거나 **판매 증개자**가 Section 48을 포함하여, 법령, **UTC** 공급자 행동강령, 또는 정책을 위반하였음을 제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보증할 것이다. **후원자**는 사용 기간 및 기간 종료로부터 3년 동안 모든 수령한 보고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그러한 보고서와 확인서 각각의 사본을 **BU 대표**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BU 대표**는 그러한 보고서를 **BU** 중앙 문서철(central BU file)에 보관할 것이다. **판매 증개자의** 월간 활동 보고서에 관련하여 제공된 **판매 증개자**와 **후보자** 확인서는 요건 17 및 18을 대체한다.
24. **BU** 법률 고문의 **판매 증개자**에 대한 연간 현장 보증을 검토한다.

**첨부 4: 신청 제안서**

**일자:** [ ]  
**수신:** UTC 감사 상무이사  
 UTC 글로벌 윤리 및 규정 준수 상무이사  
**발신:** [후원자]  
 [운영 단위 최고 경영자]  
 [BU 대표]  
**답신:** 조치 — [후보자]와의 판매 중개 계약(안)

**승인요청**
**1. 요약**

[BU]는 [배급자/NSR] [직무의 유형 기술]로서 [후보자]가 [BU]를 대리하는데 대한 귀하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CPM 48E에 따라 승인이 필요합니다. [필요 승인을 위한 이유 기술(예, 신규 Aero BU NSR, 성과 보수 수령이 승인된 Aero BU NSR, 심사 성과 보수, 심사 의뢰비용, 비표준 약관, 실질적 변경), 심사 성과 보수인 경우, 직접판매거래에 관한 간략한 설명과 총 및 순 계약 가액, USD와 %로 표시한 보수 안을 포함한다.]

**2. 계약(안)**

[BU]는 다음의 주요 사업 약관이 포함된 [UTC 계약 주체]와 [후보자]의 판매 중개 계약서 체결 승인을 요청합니다.

주요 조항	
제품·서비스	[제품 및 서비스 기술]
판매 영역/국제투명성기구(TI) 지수 및 고객	[판매 영역 내의 각 국가와 현재 TI 부패인지 지수, 계약에 포함된 고객에 대한 관련 설명 또는 한도 기술]
보수	[거래당 및 계약 최고 비율을 포함한 구조 및 액수 요약, 성과 보수인 경우, 판매 대금 중 % 및 통상적인 판매 가격 또는 범위 표시. 이 설명에는 제품 가격에 성과 보수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또한 만약 그러한 경우, 방식(예,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FMS-FMF인 경우, 성과 보수가 관련 미국 정부 법규에 따라 허용 가능한 직접 또는 간접 비용인지의 여부)이 표시되어야 한다.]
최대 보수	[후보자가 단일 거래 또는 기간 중 일련의 거래에서 벌 수 있는 합리적인 최대 보수를 추정한다.]
기간	[예, “승인된 판매 중개 계약 시행 일자로부터 x년”]
비표준 약관	[비표준 약관을 모두 설명]

**3. 승인**

[요구·획득한 모든 BU 승인을 기술한다.]

**사업상 사유**
**1. 판매 중개자 필요성**

[해당 판매 영역 내의 UTC 직원 대신 또는 그들에 추가하여 판매 중개자를 활용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또는 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유가 판매 중개 계약서(안)의 업무 기술, 성과 기준, 보고 조항뿐만 아니라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특정 자격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한다.]

**2. 후보자 식별 및 선정**

[잠재적 후보자를 찾아내기 위하여 수행한 시장 조사 수준을 기술한다. 모든 고려한 후보자를 나열하고, 각각의 후보자가 UTC의 요구에 부합될 자격이 있거나 없다고 판단하였는지, 왜 그러한지를 설명한다. 대리인, 소유구조, 모든 활동 범위, 직원, 물리적 위치, 수입, 유사한 사업 정보를 포함하여 후보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시하고, 핵심 직원이 누구인지를 포함하여 제안된 서비스를 후보자가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를 기술한다. 식별된 성과 요건을 완수할 최적의 능력과 비용 등의 객관적인 기준을 근거로 하여, 해당 후보자가 왜 선정되었는지 설명한다. 만약 승인 요청의 근거가 심사 성과 보수인 경우, 후보자가 관련 직접판매거래 또는 관련된 일련의 직접판매거래를 확보하는 데 어떻게 UTC를 지원할 수 있는지 기술한다.]

**보수 안의 합리성**

[BU 보수 및 가격책정 정책에 관한 개요, 제안된 보수안(성과 보수, 의뢰비용, 비용, 기타 인센티브 보수, 그리고 보수 안이 보수 및 가격책정 정책에 의하여 어떻게 승인되는지 포함)을 제시한다. 제안된 보수 구조와 수준이 제공될 특정 가치와 후보자가 부담하는 사업 리스크에 관련하여 왜 합리적이며, 가능한 한 부패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실사**

[수행한 모든 실사를 기술한다.]

**판매 중개 계약**

위에 공개된 내용을 제외하고, 후보자는 규정 및 표준 업무지침 48E 절: 판매 중개자의 첨부 6(적용되는 대로)에 규정된 모든 조항을 포함하여, 관련된 시장 및 제품, 서비스의 성격에 맞게 작성된 판매 중개 계약(“계약”)을 수락하였음. 후보자는 BU의 판매 중개자로서 회사 정책 매뉴얼 48 절: 부패방지 및 48E 절 판매 중개 계약서, 적용 가능한 법규를 준수한다는 결정을 했고 이를 위반한 경우, BU 대표(또는 지정담당관)는 판매 중개 계약의 종료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고지 했음. BU 대표(또는 지정 담당관)는 또한 최종 계약서의 모든 당사자의 필요한 모든 승인과 서명을 받은 후에 시행되고, 모든 승인과 최종 서명을 받기 전에 판매 중개 계약서에 따라 어떠한 지불금도 판매 중개자에게 적립되거나 지불되지 아니할 것임을 고지 했음. 또한 서면 협의서에 명시된 금액을 제외한 어떠한 결재도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을 고지 했음. [비표준 약관 또는 기타 위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설명하고 그 이유를 제시한다.]

**관찰 및 훈련**

[BU의 책임 당사자(후원자 포함)가 수행하는 모든 관찰과 후보자에게 제공될 필요한 훈련을 기술한다.]

**확인서**

신청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후원자, 운영 단위 최고 경영자, BU 대표는 각각 이에 따라, 임명 안이 본 규정 48절이나 48E절 또는 적용 가능한 법규를 위반 또는 위배할 것임을 제시하는 어떠한 사실이나 상황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며, 후원자는 후보자가 UTC 규정 48절 및 48E절의 내용과 정신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후보자를 관찰 및 훈련시킬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첨부 5: 승인 및 통지**

BU는 표 1 및/또는 2에 제시된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키는 **판매 증개자**에 대하여 다음 승인 요건 중 더욱 엄격한 것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1: 미국 정부 대상 마케팅 또는 미국 정부 대상 판매를 제공하는 판매 증개자**

단계		기준 및 승인			
		미국 정부 대상 마케팅		미국 정부 대상 판매	
		미국 주(州)·지방 정부	미국 연방정부	미국 주(州)·지방 정부	미국 연방정부
선정	심사 고정 보수 없음 또는 로비스트로 간주되지 아니함	운영 단위 법률 고문	BU 법무감 지정 담당관	BU 법무감 지정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U 법무감</li> <li>CVP GEC</li> </ul>
	심사 고정 보수 있음	BU 법무감 지정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U 법무감</li> <li>CVP GEC 지정 담당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U 법무감</li> <li>CVP GEC 지정 담당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U 법무감</li> <li>CVP GEC</li> </ul>
	로비스트 간주대상	CPM 48D: 로비스트에서 요구되는 승인			
사용 중	실질적 변경	BU 법무감 지정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U 법무감</li> <li>CVP GEC 지정 담당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U 법무감</li> <li>CVP GEC 지정 담당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U 법무감</li> <li>CVP GEC</li> </ul>
갱신	실질적 변경 없음	운영 단위 법률 고문	운영 단위 법률 고문	BU 법무감 지정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U 법무감 지정 담당관</li> <li>CVP GEC 지정 담당관</li> </ul>
	실질적 변경	BU 법무감 지정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U 법무감</li> <li>CVP GEC 지정 담당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U 법무감</li> <li>CVP GEC 지정 담당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U 법무감</li> <li>CVP GEC</li> </ul>

**표 2: 기타 기준**

단계	기준	승인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U 심사 성과 보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U 법무감</li> <li>BU 최고 재무관</li> <li>BU 최고 경영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주 1</li> <li>비표준 약관</li> <li>회사 심사 성과 보수,</li> <li>심사 고정 보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U 선정 승인자 이상</li> <li>UTC 감사 상무이사</li> <li>VP GEC</li> </ul>
사용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질적 변경</li> <li>회사 심사 성과 보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U 선정 승인자 이상</li> <li>UTC 감사 상무이사</li> <li>VP GEC</li> </ul>
	이중 사용	CVP GEC 지정 담당관(통지)
갱신	실질적 변경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U 법무감 지정 담당관</li> <li>VP GEC 지정 담당관</li> </ul>
	실질적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U 선정 승인자 이상</li> <li>VP GEC</li> </ul>

표 1 과 2 상에서:

“BU 심사 성과 보수”란 가액 미화 500,000 달러를 초과하는 **직접판매거래** 또는 일련의 **직접판매거래**에 대하여 제안된 **성과 보수**를 의미한다.

“**로비스트 간주대상(Deemed Lobbyist)**”이란 **미국 정부 대상 마케팅** 또는 **미국 정부 대상 판매** 제공으로 인하여 미국 연방 또는 미국 주(州)-지방 법규에 따라 어떤 **판매 중개자**가 **로비스트**로 간주되는지를 설명한다.

“**이중 사용(Dual Use)**”이란 **회사**가 과거에 승인한 **기존 판매 중개자**를 과거에 **회사**에 승인된 또는 공개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함을 의미한다.

“**회사 심사 성과 보수**”란 다음과 같은 **직접판매거래** 또는 일련의 관련 **직접판매거래**에 대하여 제안된 **성과 보수**를 의미한다.

**표 3: 회사 심사 성과 보수**

판매 중개자 상태	CPI ≤ 50	CPI > 50
신규 판매 중개자	미화 500,000 달러 초과	미화 1,500,000 달러 초과
기존 판매 중개자	미화 1,500,000 달러 초과	미화 3,000,000 달러 초과

표 3에서:

- “**기존 판매 중개자**”란 다음과 같은 **판매 중개자**를 의미한다: (1) **회사** 승인을 요청하는 **BU**를 연속 2년 이상 대리한 경험이 있거나 (2) 현재 승인을 요청하는 거래와 본질적으로 유사하거나 관련된 개별 거래에 대하여 **회사** 승인을 요청하는 **BU**를 대리하기 위하여 과거 2년 이내에 **회사**가 승인한 자
- “**신규 판매 중개자**”란 **회사** 승인을 요청하는 **BU**를 대리한 경험이 연속 2년 미만이며, 과거 2년 이내에 **회사**가 승인한 적이 없는 **판매 중개자**를 의미한다.
- “**CPI**”란 거래 또는 일련의 관련 거래가 이루어질 국가에 대하여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공표한 가장 최근의 부패 인지 지수를 의미한다.

“**비표준 약관(Non-Standard Terms)**”이란 (1) **판매 중개 계약**이 만료된 후 **판매 중개자**가 **UTC**를 대표함에 따라 발생한 보수 지불 의무, (2) **기존 BU 보수 및 가격책정 정책**에 승인되지 아니하였거나 그를 초과한 보수, (3) **판매 중개자**의 명의로 등록된 판매 영역 내의 은행 계좌가 아닌 다른 방식을 이용한 보수 지불, (4) 성과 보수 지급 의무가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순 판매 대금을 **운영 단위**가 실제로 회수하였을 때의 비율에 따른 보수가 아닌, 다른 기준에 의한 **성과 보수** 지불, (5) **NSR**에 대한 4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판매 중개 계약(안)**(또는 범주 1(**첨부 3** 참조) 또는 **미국 정부 대상 마케팅** 또는 **미국 정부 대상 판매**를 제공하는 **판매 중개자**의 경우 2년), (6) **첨부 6**에 제시된 필수 약관과 중대한 차이가 있는 **판매 중개 계약(안)**을 의미한다.

“**심사 고정 보수(Qualifying Fixed Compensation)**”란 미화 15,000 달러/월 또는 미화 180,000/년을 초과하는 고정액 또는 의뢰비용을 의미한다.



**첨부 6: 판매 중개 계약서(이하 “SIA”라 한다)**

범주 5 에 대하여 항목 2~4 및 10~14, 범주 4 에 대하여 항목 2~5, 10~14, 범주 1~3 판매 중개자에 대하여 항목 1~15 요구(첨부 3 참조). 적용 가능한 경우 항목 15 요구(예, 미국 정부 마케팅 또는 미국 정부 판매)

번호	조항	주제	세부 내용
1	일반 상업	업무 / 판매 영역 기술	업무 기술과 판매 영역은 효과적인 관찰과 성과 평가를 위한 측정 및 감사가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2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액: 합계 최고액 및 보수 유형에 따른 금액(적용 가능한 대로 월간-연간-계약 최고액 등)</li> <li>성과 보수(NSR): 적용 가능한 % 요율 및 거래당 최고액</li> <li>비용: 보상 가능/불가능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li> <li>의뢰비용: 월간 액수</li> <li>인센티브 보수: 목표·조건 및 적용 가능한 요율·금액을 상세하게 기술</li> </ul>
3		지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액: (예외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 판매 중개자의 명의로 판매 영역에 등록된 은행 계좌로 송금만 가능</li> <li>성과 보수(NSR): UTC 가 직접판매거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결제의무가 없으며, 성과 보수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순 판매 대금을 운영 단위가 실제로 회수하였을 때, 비율에 따른 지불로 제한된다.</li> <li>비용: 항목별로 된 상세한 청구서를 제시한 경우, 미불금</li> <li>인센티브 보수: 명시된 목표·조건 만족 시, 미불금</li> </ul>
4	서약	사업 윤리·규정 준수	<p>판매 중개자는 무조건적으로 다음에 동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공모, 이해관계의 충돌, 부패, 불공정 경쟁을 금지하는 법규를 포함한 적용 가능한 법규, (b) UTC 공급자 행동강령을 언제나 [준]수한다.</li> <li>[언]제나 다음을 제의, 약속, 제공 시도, 또는 제공을 (직간접적으로) 삼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떠한 부패 지급금</li> <li>[UTC 직원, 고객, 또는 정부 공무원에 대한 판매 중개자의 소유권, 금전, 또는 기타 이득(예, 지배 직위, 채용, 자문, 수급)</li> </ul> </li> <li>[SIA 기간 중에 정부 공무원 또는 정부 공무원의 대리인이 되는 것을 삼간다.</li> <li>[UTC 를 대표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거래 및 비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장부 및 기록물에 기록한다.</li> <li>[UTC 를 위한 업무에 관련된 모든 적용 가능한 등록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한다.</li> </ul>
5		훈련	판매 중개자는 모든 의무적 온라인 훈련을 완료하고 UTC의 합리적인 요청 시 모든 대면 훈련에 참석할 것에 동의한다.
6		감사	<p>판매 중개자는 UTC 또는 UTC 의 승인된 대리인이 합리적인 시간을 두고 통지할 경우, UTC 가 판매 중개자의 다음에 접근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업 장소, 인원, 장부 및 기록물(검사 및 복제)에 대한 충분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TC 의 사업과 UTC 가 관련된 거래에 관련된 회계 및 사업 수행</li> <li>[SIA, Section 48, 적용 가능한 법규의 준수</li> </ul>
7		서류 보관	판매 중개자는 UTC 의 감사 권한에 속하는 모든 장부 및 기록물을 SIA 에 따른 최종 지불 후 3년 또는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만약 SIA 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종료된 경우, 판매 중개자는 최종 종료 합의 후 3 년간 종료된 업무에 관련된 모든 장부 및 기록물을 유지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SIA 에 따라, 그리고 SIA 에 관련하여 발생된 청구, 분쟁, 소송 또는 청구의 해결에 관한 기록물을 그러한 탄원, 소송, 또는 청구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일반적 협조	판매 중개자는 [(a) 월간 활동 보고서 - Aero BU NSR 은 의무적] (b) 연간 판매 중개 계약서의 준수 확인, (c) 판매 중개 계약서의 이행을 위하여 법률이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서류 및 자료를 제공하고 이행하는 데 동의한다.
9		배타성	판매 중개자는 UTC 가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경쟁하는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 영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홍보 또는 판매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배급자와 NSR 조항의 경우 적용 가능한 대로 병합).
10	표명 및 보증		<p>판매 중개자는 SIA 시행일자로부터, 그리고 계속적으로 공개목록(Disclosure Schedule)에 제시된 내용 또는 서면으로 신속하게 UTC 에 통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다음을 명시적으로 인정, 표명, 보증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문지와 확인서가 SIA 의 일부로서 병합되었으며, 모든 측면에서 정확하다.</li> </ul>

			<p>[기]록의 소유자는 위탁한 <b>판매 중개자</b> 또는 타인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지 아니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판매 중개자</b> 또는 그의 관리자 또는 직원은 <b>정부 공무원</b> 또는 <b>정부 공무원</b>의 대리인이 아니다.</li> <li>• [어]떠한 <b>UTC</b> 직원, <b>고객</b>, <b>정부</b>, 또는 <b>정부 공무원</b>도 <b>판매 중개자</b>에 대하여 소유권, 금전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지 아니하며, <b>판매 중개자</b>가 <b>UTC</b>를 대리하는데 있어 달리 개인적인 이득을 받지 아니한다.</li> <li>• <b>판매 중개자</b>의 직원이 전직 <b>정부 공무원</b>임으로 생기는 제한(예, “회전문”)을 포함하여, [S]IA 및 수행된 업무는 적용 가능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위배되지 아니하였으며, 앞으로도 위반하거나 위배되지 아니할 것이다.</li> <li>• <b>[판매 중개자</b>는 모든 허가, 면허, 승인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b>UTC</b>와 거래하고 <b>UTC</b>를 대표하는데 필요한 모든 등록과 보고를 완료하였다.</li> <li>• <b>[UTC 공급자 행동강령</b>을 읽고 이해하였다.</li> <li>• [S]IA에 따라 지불할 의무가 있는 보수는 오로지 <b>판매 중개자</b>가 <b>UTC</b>에 대하여 수행된 서비스에 대한 것이며, <b>판매 중개자</b>는 오로지 정당하고 합법적인 사업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li> <li>• <b>[판매 중개자</b>는 아무런 <b>부정 금품</b>도 제안, 약속, 조성, 제공하거나 조성 또는 제공을 시도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떠한 <b>UTC</b> 직원, 고객, 또는 <b>정부 공무원</b>에게도 <b>판매 중개자</b>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 금전, 또는 기타 이득(예, 지배 직위, 채용, 자금, 수급)을 제안, 약속, 조성, 제공하거나 조성 또는 제공을 시도하지 아니하였다.</li> <li>• <b>[UTC</b>는 위의 표명 및 보증을 근거로 하여 미국을 비롯한 기타 국가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세금 환급을 신청할 것이다.</li> <li>• <b>[판매 중개자</b>는 <b>UTC</b>에 제공된 설문지, 확인서 또는 위의 표명과 보증이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하거나 정확하지 아니한 경우, 서면으로 즉시 <b>UTC</b>에 통보하는 것에 동의한다.</li> </ul>
11	기간		<p><b>NSR</b>의 경우, 한정된 기간(최장 4년, <b>범주 1</b>의 <b>NSR(첨부 3 참조)</b> 또는 <b>미국 정부 대상 마케팅</b> 또는 <b>미국 정부 대상 판매</b>인 경우, 2년), 상호간에 서면 연장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만료됨을 명시한다.</p>
12	종료/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0일(또는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른 다른 최저 통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합리적인 사전 통지 시, 편의에 따라 종료 가능.</li> <li>• [다]음과 같은 경우, <b>UTC</b>에 의한 일방적인 종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판매 중개자</b> 또는 그의 지시자, 관리자, 또는 직원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판매 영역에서 또는 어떠한 <b>정부</b>, <b>정부 공무원</b>, 또는 <b>고객</b>에게 기피 인물이 되었거나, <b>정부</b> 또는 <b>정부 공무원</b>으로부터 비행으로 인하여 고발되었거나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된 경우</li> <li>○ <b>[판매 중개자</b>가 <b>SIA</b>를 위반한 경우로서, 특히 <b>판매 중개자</b>가 <b>UTC</b>의 감사 또는 조사 협조를 거절하거나 미이행 한 경우 등</li> <li>○ <b>[판매 중개자</b>가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지하고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b>판매 중개자</b>의 표명 또는 보증, 설문지, 기타 확인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확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유가 <b>UTC</b>에 있는 경우</li> <li>○ <b>[UTC</b>가 오로지 자신의 판단에 따라, <b>판매 중개자</b>의 행동 또는 <b>SIA</b>가 미국 법령 또는 판매 영역의 적용 가능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배하고 있다고 결정한 경우</li> <li>○ <b>[판매 중개자</b>가 지급불능, 파산, 또는 피관재인이 된 경우</li> <li>○ <b>[판매 중개자</b>에 대한 소유권이 <b>UTC</b>의 합리적인 결정에 따라 (a) <b>SIA</b>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이 있거나 (b) <b>판매 중개자</b> 또는 <b>UTC</b> 직원에게 이해관계의 충돌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경우</li> </ul> </li> <li>• <b>[UTC</b>는 <b>판매 중개자</b>의 서약, 표명, 또는 보증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될 경우, 지불하여야 할 보수의 지불을 연기하거나 종료할 수 있으며, 관련된 서약, 표명, 보증이 그러한 보수에 관련된 경우, 이미 지불한 보수를 회수할 권리를 갖는다.</li> <li>• <b>[UTC</b>는 <b>판매 중개자</b>의 <b>SIA</b> 또는 적용 가능한 법령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관련하여 <b>UTC</b>에 유발된 모든 비용과 손실을 <b>SIA</b>에 따라 지불하여야 할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li> </ul>
13	기타	상태-대리인 없음	<p><b>판매 중개자</b>는 독립적 계약자이다. <b>SIA</b>는 갑을 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한다.</p>
14		배정/하도급	<p><b>UTC</b>의 유일한 재량권 보유에 동의하는 <b>UTC</b> 법률 고문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이, <b>판매 중개자</b>는 <b>UTC</b>를 대표하기 위하여 <b>SIA</b>를 배정하거나 직원이 아닌 자 또는 기타 <b>단체</b>를 이용할 수 없다.</p>
15	부속 협의		<p>모든 부속 협의서에는 <b>SIA</b>의 약관이 포함되며, 개별 프로젝트/거래 <b>성과 보수</b> 협의 및 제품 구매 및 판매 협의(<b>배급자</b>)가 여기 해당된다.</p>

미국 연방정부 계약 또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UTC**를 대리하는 판매 중개자에게는 항목 16 이 의무적이다.

16	미국 연방정부 계약	미국 연방정부 계약에 적용 가능한 법규 및 <b>CPM 4: 미국 정부와의 계약 시 사업 윤리 및 행동(인신매매 대처를 위한 UTC 규정 준수 계획 포함 - CPM 4의 첨부 3 참조) 준수</b> . 공급자의 미준수를 이유로 한 UTC의 일방적 종료 권리
----	------------	---